

의안번호	2215835
의 퇴 인	이헌승의원
회 답 일	2026.5.15.
추계번호	25D71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까지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급기간을 단기복무 제대군인 6개월, 중기복무 제대군인 7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 8개월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3,102억 3,400만원(연평균 620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전직지원금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58,534	59,968	61,948	63,928	65,856	310,234	62,0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2 (전직지원금)	국가는 제대군인(제2조제1항제5호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제외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함(제1항)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6개월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7개월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8개월간 지급함(제2항)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 (정의)	○	-
2	안 제18조의2 (전직지원금)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까지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급기간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6개월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7개월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8개월간으로 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의 전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최근 5년간 전역인원, 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지원단가는 구직급여일액 최고액 인상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최근 5년간 최저임금상승률을 고려한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을 기준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전직지원금 지급대상과 기간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 개정안은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까지 확대하도록 규정

-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원대상 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최근 2년간 증감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2년간 평균으로 가정함

[표 2] 제대군인 전역인원

(단위: 명, %)

	2021	2022	2023	2024	2025	최근 2년 평균	연평균 증감률
장기복무제대군인	852	1,147	1,398	1,751	1,789	1,770	20.4
중기복무제대군인	2,366	2,606	3,467	3,770	3,682	3,726	11.7
단기복무제대군인	12,242	11,635	10,777	9,263	8,945	9,104	-7.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현재 전직지원금 월 지급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만원, 중기복무제대군인은 5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시, 2025년 지급단가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표 3] 전직지원금 월 지급금

(단위: 천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3~2025 연평균 증감률
장기복무제대군인	500	700	700	770	810	7.6
중기복무제대군인	250	500	500	550	580	7.7

자료: 국가보훈부

[표 4] 현행법에 따른 전직지원금 월 지급금 추정

(단위: 천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23~2025 연평균 증감률
장기복무제대군인	940	1,010	1,090	1,170	1,260	7.6
중기복무제대군인	670	720	780	840	900	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은 월 지급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수준이 유사하고 향후 상한액 변동 관련 구체적 계획 미비로, 2026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증가율 3.4%를 적용하여 산정함¹⁾

[표 5]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및 하한액

(단위: 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증가율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68,100	0.6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55,808	58,624	61,568	63,104	64,192	66,048	3.4

자료: 고용노동부

[표 6]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및 전직지원금 추정

(단위: 원, %)

	2027	2028	2029	2030	2031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70,415	72,810	75,285	77,845	80,491
전직지원금	1,024,416	1,059,264	1,095,264	1,132,512	1,171,0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최근 2년간 전역자 수에 최근 2년간 전직지원금 신청률을 적용하여 신청자수를 산정하고, 2025년 기준 월 지급액에 최근 3년간 월 지급액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월지급액을 산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지급률을 적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전직지원금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 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 3,500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상한인 11만 3,500원의 60%인 6만 8,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반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최저임금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2021~2025년까지 66,000원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2026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상한액을 역전하게 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되었음. 고용노동부는 향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표 7] 현행법에 따른 전직지원금 재정소요 추정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전역자 수 (명)	장기복무제대군인	1,770	1,770	1,770	1,770	1,770
	중기복무제대군인	3,726	3,726	3,726	3,726	3,726
신청자 수 (명)	장기복무제대군인	981	981	981	981	981
	중기복무제대군인	2,719	2,719	2,719	2,719	2,719
신청률 (%)	장기복무제대군인	55.4	55.4	55.4	55.4	55.4
	중기복무제대군인	73.0	73.0	73.0	73.0	73.0
월단가 (천원)	장기복무제대군인	940	1010	1090	1170	1260
	중기복무제대군인	670	720	780	840	900
지급개월 (개월)	장기복무제대군인	6	6	6	6	6
	중기복무제대군인	6	6	6	6	6
평균지급률 (%)	장기복무제대군인	0.874	0.874	0.874	0.874	0.874
	중기복무제대군인	0.899	0.899	0.899	0.899	0.899
재정소요 (백만원)	장기복무제대군인	4,833	5,193	5,604	6,015	6,478
	중기복무제대군인	9,823	10,556	11,435	12,315	13,195
	합계	14,655	15,748	17,039	18,330	19,6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단기복무제대군인에게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단기복무제대군인 6개월, 중기복무제대군인 7개월, 장기복무제대군인 8개월로 하며, 월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증가율 3.4%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가정하고 단기복무제대군인의 신청률 및 평균지급률은 중기복무제대군인과 같다고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 개정안에 따른 전직지원금 재정소요 추정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전역자 수 (명)	장기복무제대군인	1,770	1,770	1,770	1,770	1,770
	중기복무제대군인	3,726	3,726	3,726	3,726	3,726
	단기복무제대군인	9,104	9,104	9,104	9,104	9,104
신청자 수 (명)	장기복무제대군인	981	981	981	981	981
	중기복무제대군인	2,719	2,719	2,719	2,719	2,719
	단기복무제대군인	6,642	6,642	6,642	6,642	6,642
신청률 (%)	장기복무제대군인	55.4	55.4	55.4	55.4	55.4
	중기복무제대군인	73.0	73.0	73.0	73.0	73.0
	단기복무제대군인	73.0	73.0	73.0	73.0	73.0
월단가 (천원)	장기복무제대군인	1,060	1,090	1,130	1,170	1,210
	중기복무제대군인	1,060	1,090	1,130	1,170	1,210
	단기복무제대군인	1,060	1,090	1,130	1,170	1,210
지급개월 (개월)	장기복무제대군인	8	8	8	8	8
	중기복무제대군인	7	7	7	7	7
	단기복무제대군인	6	6	6	6	6
평균지급률 (%)	장기복무제대군인	0.874	0.874	0.874	0.874	0.874
	중기복무제대군인	0.899	0.899	0.899	0.899	0.899
	단기복무제대군인	0.899	0.899	0.899	0.899	0.899
재정소요 (백만원)	장기복무제대군인	7,266	7,472	7,746	8,020	8,295
	중기복무제대군인	18,130	18,643	19,328	20,012	20,696
	단기복무제대군인	37,971	39,045	40,478	41,911	43,344
	합계	63,367	65,161	67,552	69,943	72,3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법에 따른 전직지원금 재정소요와 개정안에 따른 전직지원금 재정소요의 차이로 추계기간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9] 개정안에 따른 전직지원금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현행법에 따른 전직지원금(A)	14,655	15,748	17,039	18,330	19,673
개정안에 따른 전직지원금(B)	63,367	65,161	67,552	69,943	72,334
추가재정소요(B-A)	58,534	59,968	61,948	63,928	65,8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체대군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급기간을 단기복무 체대군인 6개월, 중기복무 체대군인 7개월, 장기복무 체대군인 8개월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3,102억 3,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전직지원금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추가재정소요	58,534	59,968	61,948	63,928	65,856	310,2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근 2년간 전역자 수에 최근 2년간 전직지원금 신청률을 적용하여 신청자수를 산정하고, 전직지원금은 2026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